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 · 李晟鳳

調查分析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 · 李晟鳳

1998. 12



序 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규범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 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국내 및 국제적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조세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온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에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논의의 방향 등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원은 대외경제전문가 풀 재정·조세분과의 김유찬 박사와 이성봉 박사에게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OECD의 논의와 시사점을 연구하도록 의뢰하였고, 그 연구 결과물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정부, 민간 및 학계의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998년 12월
院長 李 景 台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규범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당부분 국제거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문제는 국제 논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국내적 및 국제적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조세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온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향후 논의전망 등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할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과제는 부가가치세, 관세, 국제조세 및 세무행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와 용역에 대해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급장소 개념을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관세의 경우 기존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적으로 주문·배달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어 나타나는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이 문제되고 있다. 사업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이 주요 문제이다. 조세 행정분야에서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며, 당해 소득과 납세자 등 각종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세법의 효과적 시행과 이를 통한 세수확보가 주요 이슈이다.

조세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과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정부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보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며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기존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선언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WT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여야 한다.

소득세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원천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OECD 논의에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주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서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원천과세 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전가격문제와 관련해서는 OECD와 선진국들의 논의를 지켜

보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을 위한 과세자료의 효과적인 적기 확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과세당국도 납세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전자적 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目 次

I. 서론	11
II.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14
1.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14
가. 인터넷 사용 현황	14
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6
2.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19
가. 소비세 분야	20
나.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22
다. 세무행정 분야	27
III.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OECD의 논의와 시사점	29
1.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 개요	29
가. 위원회별 논의 현황	29
나. 주요 회의별 논의내용	30
2. 과세 분야별 논의내용에 대한 시사점	34
가. 부가가치세 분야	34
나. 관세 분야	41
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43
라. 세무행정 분야	49

IV. 결 론	56
참고문헌	61
부 록	67
<부록 1> 최근 발표된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들의 내용 요약	69
<부록 2> WTO와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과세 관련 논의내용	76
Executive Summary	85

表 目 次

<표 I -1>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11
<표 II -1> 전세계 호스트 수	15
<표 II -2> 국내 호스트 수	15
<표 II -3> 인터넷 이용자 수 전망	16
<표 II -4>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현황 및 전망	16
<표 II -5>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예측	17
<표 II -6> 미국 웹서비스의 전자상거래 매출액 규모	18
<표 II -6>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8
<표 III -1> EU의 부가가치세 체제상 서비스의 공급장소	36

I. 서론

전자상거래의 출현은 상거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가계활동, 정부의 업무형태, 소비자 행동, 기업의 조직 등을 포함한 경제환경에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야기한다. 전자상거래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표 I-1>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표 I-1〉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의 미
경제주체	기업, 개인, 행정기관 등
상 품	물리적 상품 및 디지털화된 상품으로 구분
업무절차	조달, 물류, 생산, 마케팅, 서비스를 의미

자료: Schmid B., "Requirements for Electronic Markets Archite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Markets, Vol. 7, No. 1, 1997, pp.
3~6.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기업간 거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과 행정기관간 거래, 소비자와 행정기관간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크게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화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활동 측면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형태(on-line)의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와 같이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주문-결제-배달이 모두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형태(off-line)의 전자상거래는 유형

(tangible)의 상품에 대하여 주문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배달은 우편 혹은 택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¹⁾).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과세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자. 국가의 과세행위는 한 나라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조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규모의 과다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나 그 존재의 필요성은 전자상거래에도 부인될 수 없다. 전자상거래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소량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단일 사업자의 누적거래량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큰 세수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와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업환경 속에서 관세정책을 포함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조세제도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제거함과 동시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는 기존의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논의의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제조세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온 OECD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향후 논의전망 등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할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OECD,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Survey of Status and Issues". 1997a.

제I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II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확산 현상을 개관하고, 제III장에서는 OECD의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논의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계시켜 논의한다. 제IV장에서 결론으로 향후 OECD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부록에서는 최근 OECD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조세관련 중요문건을 요약·번역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OECD를 제외한 여타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II.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1. 인터넷 사용 현황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전자상거래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고 전자상거래가 매우 다양한 거래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절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예측한 전자상거래 현황을 정리해 본다.

가. 인터넷 사용 현황

1) 호스트 현황

1998년 1월 현재 전세계 인터넷 호스트²⁾ 수는 2천 9백 67만대로 나라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일, 영국, 캐나다 순이다. 전체 호스트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다소 떨어져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아시아 각국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호스트의 수는 인터넷의 양적 팽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이 네임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 수를 의미한다. 인터넷 호스트는 인터넷에 연결된 대용량 컴퓨터이며 1대의 호스트는 수천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호스트 수는 각 국가의 인터넷의 규모, 보급률과 이용도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998).

〈표 II-1〉 전세계 호스트 수

(단위: 천)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호스트 수	1,313	2,217	4,852	9,472	16,146	29,670

자료: Network Wizards, 1998, <http://www.nw.com>

우리나라의 호스트 수는 199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1998)에 의하면 2002년에는 43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II-2〉 국내 호스트 수

(단위: 천)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호스트 수	14	37	73	131	189	249	309	368	431

자료: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998.

2) 인터넷 이용자 수

1997년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3,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평균 79%가 증가하여 2002년에는 이용자 수가 1억 4천 2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자가 1997년도에 2천 4백만 명으로 전세계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을 통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14% 가량으로 실제 전자상거래에는 아직 상당히 신중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2000년경에는 45% 가량의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

〈표 II-3〉 인터넷 이용자 수 전망

(단위: 백만 명)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세계	19	36	67	92	106	127	142
미 국	12.5	24	33	39	51	58	64

자료: e-land, 1997, <http://www.e-land.com>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회(1997)에 의하면 1997년의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백만 명을 넘었으며 2002년에는 4백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인터넷 이용자수를 보면 이러한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98년 11월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이미 310만 명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매일경제 1998년 12월 31일, 14면).

〈표 II-4〉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명)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자 수	0.7	1.1	1.4	1.8	2.5	3.4	4.2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7.

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에 대하여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입수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7년에 11억 3천

3) e-land, 1997, <http://www.e-land.com>

8백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65억 7천 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⁴⁾.

〈표 II-5〉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예측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컴퓨터	140	323	701	1,228	2,105
여행	126	276	572	961	1,579
오락	85	194	420	733	1,250
의료	46	89	163	234	322
선물/꽃	45	103	222	386	658
음식/음료	39	78	149	227	336
기타	37	75	144	221	329
합계	518	1,138	2,371	3,990	6,579

자료: Forrester Research, "U.S. Industry and Trade Outlook 1998", 1997.

각 분야별로 웹서비스에 의한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미국 전체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대략 0.02%부터 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락, 컴퓨터 상품, 여행, 직접 마케팅 등에서 전자상거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⁵⁾.

4) "U.S. Industry and Trade Outlook 1998", Forrester Research 1997.

5) ETRI, "주간기술 동향", 통권 830호, 1996.

<표 II-6> 미국 웹서비스의 전자상거래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분 야	총매출액	WWW	WWW
	미국 전체	매출액	점유율(%)
여 행	339,600	145	0.043
오 락	32,600	100	0.31
컴 퓨 터 제 품	56,800	85	0.15
출 판 / 정 보	47,200	25	0.05
기 타	불 명	70	-
소 계	2,656,700	425	0.02
크레디트카드 결제	890,000	272	0.03
디렉트 마케팅	213,900	175	0.08

자료: ETRI, 주간기술동향, 통권 830호, 1996.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다음의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에 약 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오는 2000년에는 약 6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7>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자상거래 매출	1,400	6,258	15,094	34,434	61,396

자료: 정영현, 「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한국조세연구원, 개원5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7. 8.

2.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과세문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와 그 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과세행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한 경제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세무당국은 과세 가능한 경제행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세무당국은 특정 경제행위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을 확인하고 규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관세 등을 포함한 소비세의 경우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재산세의 경우 소유권 변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거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그 과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경제행위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사용자 통제능력을 결여시키고 있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확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정보를 보고 및 확보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감소되어 과세상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주요 특징들이 과세분야별로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지 OECD 보고서 등을 토대로 다음에서 간략히 정리해 본다.

가. 소비세 분야

1)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조세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전자상거래는 많은 경우 국제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각 국가의 조세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

조세수입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현재 각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가) 공급장소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그것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 한다. 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공급장소(place of supply)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이 공급장소(place of supply)를 어디로 볼 것인가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출현하기 이전의 기존 상거래에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되었다.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장소(사업장)에서 과세하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 직원이나 사무실 등의 가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의 개념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나아가 기존의 공급장소(place of supply) 및 사업장소(place of establishment)의 개념규정을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구별하여 과세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신문이나 책이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재화는 물리적 실체(physical identity)를 잃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새로 정립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의 문제점은 사업자가 그들의 상품을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과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⁶⁾.

다) 서비스의 유형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들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된 신종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유형구분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지므로 이들 서비스들의 유형분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EU의 공급장소의 원칙에 따르면 통신이나 방송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기술자

6) 예를 들어 EU 밖의 공급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EU의 공급자들은 공급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문서서비스나 데이터 프로세싱, 정보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재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고 있다.

2) 관세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관세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거래수단별 과세 차별의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경우로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우편주문이나 전화주문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대체하게 된다면 관세(부가가치세)수입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WTO에서 합의된 사항은 소위 온라인 거래로 불리는 직접적인 거래형태에 대해서는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제2차 WTO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이 사항은 그 성격상 잠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추후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나.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기존의 국제조세 과세원칙들은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일대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국제적 과세원칙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외국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

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현지국이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회사를 설치한 다국적기업의 경우에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또는 다국적기업의 모든 개별회사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등을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많은 거래들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개별 국가들의 이전가격규정과 OECD가 제정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 1995)의 적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고정사업장 문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1항에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되어 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원천지국에서 실재하지 않고도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유용성 내지 재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의하면 현지국에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재가 시간적, 장소적, 사업목적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컴퓨터 관련 개념들이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익을 고정사업장 조항을 통해 현지국이 과세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전자상거래에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컴퓨터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웹사이트가 사업장소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서버가 고정(fixed)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서버가 휴대용 컴퓨터나 장소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과연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 나라에 소재한 서버에 동일한 웹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이 통신량에 따라 임의의 사이트로 연결될 때 과연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이다.

셋째, 웹사이트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의 유형을 넘어선 활동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광고, 주문, 결제, 저장 및 디지털 전송과 같은 자동화된 기능이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포함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화된 내용물의 데이터 베이스를 어느 정도까지 상품의 재고로 볼 수 있는지와 동 데이터 베이스가 검색 및 보고 장치를 가졌다면, 이것이 단지, 저장, 전시 및 배달을 위해서만 유지되는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도 있다.

넷째, 웹사이트 운영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당해 기업의 대리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다섯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귀속소득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과세 관할권에 위치한 상호연결 서버들이

통신 부하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순서에 따라 접속시키게 되면 어느 서버가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소득귀속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2)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련된 사안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정보의 동시적 전달 및 물리적 경계의 제거로 과세 당국이 국제거래를 확인, 추적, 수량화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전자상거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사실관계들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가) 거래접근방식 적용의 어려움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들(속도, 빈도, 익명성, 통합성 등)로 인해 개별적 거래분석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의 통합정도가 높아감에 따라 일련의 거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나) 비교가능성 분석의 어려움

정상적 거래와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성립하는가 하는 점은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핵심이다. 비교가능성은 정상가격원칙과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한다. 활용 가능한 비교가능성의 수준은 비교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획득가능성에 달려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우선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를 충분히 찾는 것도 어렵다. 비교가능성

기준에 의할 때 제3자가 해당 다국적기업처럼 정보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게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거래에 기초하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들이 적용될 수 없다.

다) 기능분석의 어려움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서 관련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과 비교가능 제3자 거래의 관련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의 본질과 특성을 밝혀내고 동시에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와 제3자 거래의 비교가능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할당법이 적용될 경우에도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기업간 상대적 기여도를 기능분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특수관계기업간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특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능분석을 실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수행된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라) 무형자산의 구분과 평가의 어려움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intangibles)의 거래를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거래 결과에 무형자산이 끼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이전가격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생산기술,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등 무형자산의 사용이 보다 용이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이 인터넷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및 서비스간 분명한 경계를 짓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의 영향을 수량화하는 것은 보다 어렵고 여러 무형자산들이 결합된

경우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3) 사용료소득 과세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정보의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OECD 모델조세조약(제12조 제2항)은 사용료를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일체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서적의 디지털본을 다운로드한 소비자는 그 형식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세무행정 분야

조세행정의 과제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며, 당해 소득과 납세자 등 각종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세법의 효과적 시행과 이를 통한 세수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조세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결정 곤란으로 과세권 행사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힘들어질 수 있다. 셋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할 수 있다. 넷째, 탈매개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taxing points)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의 용이화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조세행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와서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기반이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전자지불체계의 발달과 조세행정상 활용이 그것이다. 전자지불체제는 가치가 디지털형태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창출할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록 전자지불체계(unaccounted system)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함께 조세행정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할 경우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전자신고(electronic filing)의 활용가능성도 높다. 이는 세무신고가 전산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무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함께 납세의무자 및 과세당국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류작업 등이 축소되고 세무신고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개인의 조세관련 정보의 보안을 위해 암호화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III.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OECD의 논의와 시사점

1.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 개요

가. 위원회별 논의현황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논의를 최초로 시작했고 가장 심도있게 전개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OECD이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여러 작업반별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소비세 특별회의 비공식작업반은 국제적 서비스교역에서 현재의 부가가치세 공급장소규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거래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충실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만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국의 과세권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동 작업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재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은 전자상거래와 이전가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전가격제도는 다국적기

업의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가 제3자간 정상적 거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이전가격제도와 관련된 접근방법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동 작업반은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특별작업반은 전자상거래가 납세협력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나. 주요 회의별 논의내용

1) 핀란드 투르크 회의

OECD는 핀란드 정부와 유럽연합,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업계자문위원회) 및 일본 정부의 협조하에 1997년 11월 19~21일에 핀란드 투르크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조 구축의 첫 단계로서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하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목적은 BIAC이 제안한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기업의 입장발표 및 토론을 통한 기업과 정부의 공조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발전의 저해요소 확인과 효과적인 제거방법에 대한 논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수립에 적절한 기관의 확인이었다.

2) 오타와 각료회의

가) 오타와 회의의 개요

OECD는 「A Borderless World-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주제하에 1998년 10월 8~9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각 나라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글로벌 정보네트워크의 운영과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원칙에 합의하고, 4건의 문서⁷⁾(그 중 “전자상거래 조세체계에 대한 조건”의 자료는 부록 참고)를 승인하고 9건의 배경문서⁸⁾를 통과시켰다.

각료회의에 앞서서 10월 7일에 열린 조세원탁회의(tax round table

- 7) ① 전자상거래 조세체계에 대한 조건: 조세체계에 대한 일반원칙, 구성요소 및 향후 계획으로 구성
 ② 개인정보보호 보호 선언: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 1980년 채택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이행을 촉구하는 각료 선언문
 ③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선언: 전자상거래에서도 일반거래와 동등한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문
 ④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Authentication) 선언: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다른 인증메카니즘의 활용 촉진을 위한 행동 지침 제시
- 8) ① 암호기술 규제 목록: 회원국의 암호기술 수출·입 통제, 사용규제 등에 관한 법·제도를 조사 정리한 보고서
 ② 경제적 영향: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③ 정보기반의 역할: 정보통신 인프라 경쟁 촉진, 시장진입, 상호연계성, 인터넷 체증 해소, 가격결정, 시스템 장애 극복 등을 다룬 보고서
 ④ 개인정보보호 선언 배경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 설명
 ⑤ 소비자보호 보고서: 소비자보호 각료선언문에 대한 추가 설명
 ⑥ 인증제도 목록: 전자서명 및 인증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정책 및 활동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⑦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시장과 관련된 시장추세 분석, 시장개발의 변수, 장애해소를 다룬 보고서
 ⑧ Y2K 문제: 밀레니엄 버그의 문제점, 경제적 파급효과, 각국의 대응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
 ⑨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이 갖는 장단점 분석, 정보기술 활용방법 및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보고서

conference)에서는 정부대표만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와 OECD 비회원국의 대표도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를 논의하였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여섯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세 기본골격의 시행은 최우선순위의 작업이고, 정부와 민간업계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이 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와 그 기반기술이 과세체제를 단순화시키고 납세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세행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제는 납세자의 부당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업계에 의해 개발중인 상업적인 기술에 의거해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를 위한 과세의 기본골격은 전통적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섯째, OECD 외부, 즉 민간업계와 각국 정부로부터의 의미있는 의견제기가 필요하며 권유된다.

여섯째, 향후 작업에서는 의견 교환의 활성화와 정부에 대한 업계의 효과적인 제언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문그룹이 참여한다.

오타와 회의에서는 상기 이행조건에 관한 OECD의 향후 논의추진과 관련해서 비회원국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병행키로 하였으며 2000년말경을 논의종결의 목표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주요 논의내용

(1) 국제조세 분야

전자상거래 소득의 과세권 배분원칙(고정사업장 문제), 이전가격, 전자상거래 소득의 성격구분문제 등이 토의된 바, 업계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규범의 제시를 요망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득의 과세권 배분문제와 관련해서, 업계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과세당국간의 문제이므로 ‘이중과세의 방지’ 외에는 큰 이해관계가 없음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현행 배분 원칙(거주지국 과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원천지국 과세인정)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희망과는 달리, 상당수 회원국이 고정사업장 개념에서의 전자상거래 상황 미반영문제, 현행원칙 적용시 원천지국의 전자상거래 과세베이스 상실 우려 등을 제기하며 새로운 세원배분원칙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소비세 분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나 기업간 거래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채택 등 대부분의 OECD 제안에 대하여 업계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는 디지털화된 상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기업-소비자간 거래에 대한 징수방안에 향후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 것 등과 관련 전통적 거래에 비하여 전자상거래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국가의 부가세 체제하에서 도서, 잡지, 신문 등의 물리적 형태를 가진 상품은 대부분 면세하는 데 반하여, 이들 디지털 형식의 재화가 서비스로 취급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 조세행정 및 납세서비스 분야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원칙이 채택되든, 이의 현실적 집행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전자상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업계에 전달되었으며, 업계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고려를 합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공동선언에 반영).

납세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기저기술을 납세자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과세당국의 의도와 관련, 업계는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2. 과세분야별 논의내용에 대한 시사점

가. 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 정책의 기본방향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당분간 재화와 용역, 특히 용역과 관련하여 수입국의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입장에 서는 것이 세수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며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이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그리고 대리납부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전체적으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서비

스를 제외한 재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비스는 대체로 공급과 동시에 공급장소에서 소비되어 해외거래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가 빈번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 외에 공급장소의 개념 정리, 서비스와 재화 구분, 서비스 유형간 구분 및 공급장소의 구별 등과 관련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2) EU의 부가가치세 관련 입장의 활용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의 확립과 관련하여 EU(유럽연합)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EU에서의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제도에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EU와 같은 입장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철저한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 제6호의 서비스와 관련한 공급장소 규정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권은 공급자의 사업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가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몇 가지 예외는 토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토지가 있는 국가가, 운수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국가가, 문화·예술과 같은 서비스는 공연이 행해지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판권, 면허, 전문적 자문서비스 등과 같은 무형 또는 지적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의 거주국 혹은 서비스를 받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⁹⁾.

9) EU는 동 EU지침 제6호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1회 과세함

〈표 III-1〉 EU의 부가가치세 체제상 서비스의 공급장소

원칙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예외	토지 관련 서비스	토지 소재지 과세
	운송 서비스	운송 발생지 과세
	문화·연예·예술 서비스	공연지 과세
	무형·지적 서비스 (저작권·특허·광고·전문적 및 자문용역, 금융거래)	소비자가 소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과세

자료: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06, 1997.

문제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현재 많은 서비스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고정사업장의 설치 없이 외국 공급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EU의 공급장소의 규정으로는 이들 서비스의 국내공급에 대하여 전혀 과세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먼저 공급장소의 개념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서버, 웹사이트, 케이블, 스위치 등과 같은 시설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자는 것인데,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써 경제적 왜곡을 막고 EU회원국들간 과세의 일관성 유지를 기하는 것이다. 동 지침 제6호는 현재 소비세분야의 국제간 세제조화와 관련하여 일종의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유지하면서 공급장소의 개념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1997년 7월 1일에 원칙적으로 EU는 정보통신 서비스에 적용하는 공급장소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공급장소를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위치하는 곳으로 보는 개념의 수정이며, 이는 서비스의 소비가 공급자의 사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이 경우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의 과세를 위하여 수요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대리납부제도(reverse charge/self-supply)의 과세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공급될 경우 해외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소비지국에 부가가치세 목적의 등록이 의무화되었다¹⁰⁾.

3) 부가가치세 관련 향후 주요정책 방향

가) 대리납부제도

우리나라는 대리납부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납세관리인

10) 전화콜백(call-back) 통신 서비스의 경우 종전에는 서비스의 '공급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따라서 콜백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통신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이 EU내에 없는 한 EU국가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콜백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체계상의 공급장소 규정을 소비자의 소재지 또는 소비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고, 과세사업자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면세 겸영사업자 포함)가 스스로 대리 납부하도록 하였고,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에 등록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제도가 있어 사업자가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리납부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EU가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여 도입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리납부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서비스는 위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대리납부제도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동 제도는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만 적용되어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자의 주문이 향후 급증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대리납부제도는 용역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외국으로부터 변호사나 회계사의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여기에 적용시킬 수 없다.

대리납부제도를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납세비용 차원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액수에 대한 징수와 환급이 한 납세자에게 있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납세비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외국용역에 대하여 과세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용역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정보확보의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개정하여 전문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를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외국의 전문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납세관리인제도

개인에 공급되는 외국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제도가 아니라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이 납세관리인제도를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EU의 역내 무역에서도 상품이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상품을 다른 나라의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비지국에 사업자로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다) 과세당국의 국제적 협조

앞서 설명한 방안들의 문제점은 외국의 서비스공급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개별국가의 과세당국간 국제적 협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납부제도와 납세관리인제도, 그리고 소비지국에 부재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과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하여 국가간에 합의를 이루고, 필요시 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자국내에 부재하면서 전자상거래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자를 파악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¹¹⁾. OECD 모델조세조약은 지금까지 직

11) 용역의 공급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국도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서 동 공급자가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 수 있

접세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간 조정의 기능을 하였으나 향후 간접세분야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가간의 상호협조를 위하여도 필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지급결제제도

고정사업장의 개념이나 공급장소 관련규정의 보완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수단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지급결제과정에 과세당국이 개입하는 방법이다. 은행 등의 지급결제기관에게 외국으로 이전되는 소득의 내용별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하여는 세무행정분야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마) 전화세

전화통신서비스가 EU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전화세의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원거리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제도나 납세관리인제도, 그리고 부재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제도 등을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원거리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세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사한 제도를 전화세법에 도입하든지, 전화세를 폐지하고 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으므로 국제간의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또한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 관세 분야

1) 논의내용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의 문제가 생기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날 경우 기존매체를 통한 거래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관세(부가가치세)수입은 급속히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앞서 지적했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비관세 지역화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비관세 환경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일본과 EU도 대체로 이러한 미국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하는 인터넷 비관세지역의 정의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에 국한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거나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에서 무관세 현황을 잠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2차 WTO각료회의(1998. 5. 18~20)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선언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동 무관세선언이 현재 상황의 잠정적 유지(standstill)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도 제3차 각료회의까지로 시한을 설정하고 동 제3차 각료회의에서 잠정적 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 3차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관련이슈(관세부과문제 포함)의 검

토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유형의 재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 될 경우에는 기존의 전화주문 및 우편주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적절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세는 단지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매개체(공 디스켓)의 가치에만 부과되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상품의 전달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면 매개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2) 관세 관련 시사점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입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3조 3의 ①에서는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고 하여 저작권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포함시켰다.

관세법 제3조의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은 관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즉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저작권이나 노하우(know-how)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세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구분해보면 소프트웨어와 전자도서의 경우 매체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비디오, 영화필름 등에 대하여는 매체뿐만 아니라 수입품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기존 상거래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경우와 이들 재화가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관세부과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우받게 되므로 중립성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WT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1) 고정사업장 관련 논의와 시사점

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국가가 해당 기업이윤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국제조세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고정사업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경우에도 어려움과 이견이 있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롭게 추가적인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국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바, 그 대안으로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응하는 방안과 고정사업장과의 관련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원천과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극단적으로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서버, 웹사이트 등을 일률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¹²⁾. 우선 이들이 사업의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더라도 워낙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다음으로 원천과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 세무당국 입장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2%를 과세하는 것은 순소득이 아닌 총지급액에 대한 세율이므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과 법인세율을 감안하면 낮은 세율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주요 자본교류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현재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을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위하여는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등에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따르고 있어서 이 규정은 움직일 수 없는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OECD의 보고서에서도 원천징수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세를 권고하였으나, 이는 물론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

12) OECD,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DAF/FE/CFA(96)46, 1996.

득을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최근 돈버그(Richard Doernberg) 교수가 오타와 각료회의와 동시에 런던에서 열린 국제재정협회(IFA) 총회와의 화상회의에서 원천지국에 대하여 고정사업장 존부와는 관계없이 저율(2~3%)의 원천과세권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향후 OECD 논의에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주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서 고정사업장의 존부에 상관없이 원천과세하는 방안의 효율성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연계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로 매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국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업자가 국내에 가진 접속점(서버나 웹사이트 등)을 기능별로 파악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2) 사용료소득 관련 논의와 시사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사용료소득에 비하여 유리하게 과세된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으면 소득의 발생지국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으나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료소득과 사업 및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간편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과세방안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서적, 음악, 영상 등과 같이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매매가 가능해진 재화는 기존의 개념에 따라 소득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에 상당한 쟁점을 야기한다¹³⁾. 디지털화된 정보의 재생산 및 유포가 기술적으로 매우 용이해짐에 따라 현재의 소득구분원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OECD의 재정위원회는 최근 들어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에 규정되어 있는 로얄티(royalty)의 개념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화된 정보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디스켓이나 CD-ROM과 같은 물리적 매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재생산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불이 사업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이 되는지의 여부는 피이전인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본질과 한도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며, 이전된 권리의 한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저작권법의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¹⁴⁾. 저

13)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사진의 구매자는 사진 한 장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으며 회사보고용으로 열 장의 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고 나아가 잡지에 실어서 대량 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래의 일부는 한 장의 유형의 사진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기업의 이윤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거주지국이 해당 이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14)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에 대하여 그 복사가 물리적 개체로 형성된 것인지 또는 전자형태로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의 권리와

작권에 따른 권리취득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은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복사행위의 권리에 따른 지불은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재정위원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원칙들이 디지털화가 모든 형태의 정보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디지털화가 가능한 정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거래와 디지털화된 서적, 이미지, 음악, 동화상 등의 거래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용료소득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다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자산이나 정보 등의 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지, 음악, 동화상 등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로 수입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사용료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및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문제인 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OECD에서의 논의와 선진국들의 경험을 수용하면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관련 논의와 시사점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의 정보공유시스템과 공동업무시스템을 통해

복사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 내에 있는 많은 개별기업들이 마치 단일기업내 여러 부서와 같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¹⁵⁾.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다국적기업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욱 통합된다. 특히 관계기업들간 공동프로젝트 형태의 업무 공유방법은 각 기업의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공헌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시너지이익(synergistic benefit)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된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국적기업은 과거에는 재화의 소재와 사용자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되었던 무형재(생산기술,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등)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¹⁶⁾. 따라서 앞으로 세무당국이 무형재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무형재가 가지는 영향, 특히 다수의 무형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수량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상태에서 이전가격 문제, 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전자상거래 발전의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상세한 검토를 행하는 것 역시 어렵다. 현재로서는 OECD와 선진국들의 논의를 지켜 보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이전가격 과세의 근본적인 어려움(비교가능거래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전통적인 독립기업간 원칙을 적용하는 입장이 약해지고 이익할당법의 입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15) 개별통신시스템이 각각의 기업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금 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기타 기능을 배제하고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에 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16) 인터넷 시장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무형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무형재의 거래와 유형재 및 서비스의 거래의 구별이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라. 세무행정 분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국제조세상의 제도가 잘 정비된다 하여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를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도보완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고정사업장 개념 재정립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조세제도 및 과세원칙도 기본적으로 조세징수, 즉 효과적인 세무행정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을 위한 과세자료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과세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과 지불결제시스템을 통한 과세방안, 호주의 국세청이 제안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자서비스 증진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과세당국간 국제적 협조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거주지국은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 처벌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의 보유가 가능하므로 이를 소비자의 거주

17) 효과적인 과세자료 확보방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타와의 OECD 각료회의의 저세원탁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각료회의에 제출될 공동발표문에서도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자료확보방안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에서 적정기법의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과세당국에 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함으로써 후자는 자국내에서 재화가 소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은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거래당사자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국의 정부부처에 신분증명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여 특정 거래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당국간의 협조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재화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재화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국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는 개별국가의 노력보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통하여 거래내용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국제조세(소득세)분야의 과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OECD의 입장은 이를 위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에 이와 관련된 문구를 삽입하도록 노력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무행정상 국가간 협조는 납세의무자의 납세 부담이 확정되었으나 국외거주로 인하여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탈세혐의가 있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교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불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제공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므로 국가간의 협조를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내용의 파악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2) 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한 과세방법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연결됨으로 인하여 과세를 위한 정보 취득이 어려워지고, 과세점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의 하나가 지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부가세원천징수시스템이 있다. 이는 결제서버에 미리 소비자의 국적, 각국별 부가세율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놓았다가 거래별로 부가세를 징수하여 해당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지급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개개인은 익명성을 유지한 채로, 국적만을 밝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호주 국세청(ATO)이 제안한 방법으로 법인의 이름이나 사업명, 호주기업고유번호(ACN: Australian Company Number) 등,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이트 식별기를 상업적인 웹사이트가 필수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¹⁸⁾.

18)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and the Internet*: Discussion Report of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ectronic Commerce Project(Canberra: Australian

이는 전통적인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과 같이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의무규정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호주기업 고유번호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는 과세당국이 법인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방안은 소비자보호와 형법의 영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낮은 행정비용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의 시행에 있어서 국가간의 공조가 필수적 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내사업이 역외 서버로부터 쉽게 운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의무규정을 쉽게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간의 협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호주 국세청은 웹숍(webshop)이 허가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웹숍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표하여 운영하는 허가받은 조직은 호주 국세청, 또는 해당 정부관청에 웹숍에 관한 세부사항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모든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업등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일치한다.

민간부문은 과세당국에 이러한 등록의무 부여를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분야의 창의적인 상거래 행위에 제동을 거는 행위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거래와의 형평성이라는 기본원칙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웹사이트에 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제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웹사이트가 단기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상거래 행위자 중에서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 혹은 소규모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예는 허다하다.

4) 신기술을 이용한 납세 서비스의 증진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납세자 서비스 향상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상호응답형 전화시스템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자동화된 개별정보를 알려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질의에 응답하고, 각종 고지서 발송 및 신고접수에 활용하는 방안과 세금의 원천징수와 환급에 직접공제제도(direct deposit program)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 및 각종 양식을 접수하고,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동성이 높은 납세자를 위한 단일의 전자우편 접근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와 정부간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OECD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과세당국이 갖출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¹⁹⁾ 미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수준의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여 전자신고확대를 시행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2백 4십만 명이 전자신고, 9백만 명이 전자이체에 의한 환급을 받고 있으며, 2007년까지 80%의 인구가 전자매체에 의하여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한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웹사이트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5,000개의 각종 서식 및 세무정보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며,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학교의 컴퓨터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9) 오타와회의에서 미국 내국세청장인 로소티(Rossotti)의 발표.

우리 과세당국도 납세자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5) 기타 과세관련 세무행정상의 쟁점 사항

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배려

OECD는 중소기업의 국제적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개인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그 과세액이 개별국가별로 작은 규모일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한 중소기업의 납세비용이 납세액을 초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절차 단순화에 대한 OECD 권고의 배경에는 소규모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비가 행해지는 곳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납세비용이 실제 납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규모가 작아서 그로부터의 징수액이 징수비용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최소화원칙(de minimus rule)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제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어려워지거나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납세자에 대한 정보요구 수준

최근 OECD 보고서²⁰⁾는 과세당국이 기존방식의 상거래 종사자에

20) OECD, Electronic Commerce : Development of a Taxation Framework, a Technical Issue Paper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DAFFE/CFA

게 요구하는 수준의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도 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촉구의 의미는 사업자의 거주지국과 소비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 사업자의 거주지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도 기존 상거래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납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웹사이트나 웹숍에서의 거래내용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거주지국 입장에서는 과세를 위한 사업내용의 파악을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소비자의 거주지국의 입장은 다르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실제 거래내용에 비하여 기존제도의 공급장소의 원칙이나 고정사업장 개념 등에 비추어는 기존방식의 상거래종사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소비지국에 낮은 정도의 납세의무와 납세관련 정보 제출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OECD에 이를 보완하여 소비지국에서 징세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정책상의 과제는 소비세, 관세, 소득세 및 국제조세 그리고 세무행정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소비세 분야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것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 한다. 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납세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급장소 개념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공급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가 생기기 이전의 기존 상거래에서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에서 과세하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 가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존의 고정된 장소의 개념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의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의 개념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관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용이하므로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가 전자상거래로 급속히 대체될 가능성도 많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분야의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외국의 현지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전자상거래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가 조세행정분야에 야기하는 과제는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며, 당해 소득과 납세자 등 각종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세법의 효과적 시행과 이를 통한 세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조세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과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 조세제도 및 행정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보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며,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

도 이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나타나는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의 문제와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관세수입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상거래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경우와 이들 재화가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관세부과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우받게 되므로 중립성의 원칙이 무너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선언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WT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여야 한다.

소득세 분야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고정사업장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원천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주요 자본교류 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을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과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OECD 논의에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주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서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연계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업자가 국내에 가진 접속

점(서버나 웹사이트 등)을 기능별로 파악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소득의 발생여부의 파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성공적인 징수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전가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OECD와 선진국들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이전가격과세의 근본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통적인 독립기업원칙 적용의 입장이 약해지고 이익분할법의 입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을 위한 과세자료의 효과적인 확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징세과정에서 결제대금이 서비스의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혹은 사용료소득이 함께 송금되는 경우나 과세회피 목적으로, 또는 다른 명분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수반되는 엄청난 행정비용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줄어든다. 지불시스템을 통한 과세방향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과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최신의 기술을 이용한 납세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응답형 전화시스템, 전자우편 및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과세신고 및 납부방안 등을 과세당국이 갖출 것을 OECD는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우리 과세당국도 납세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위에 열거된 서비스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國內文獻]

- 김유찬·이성봉, 「전자상거래와 조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1998.
-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98년 10월호 125~147면, 법무부, 1998.
-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06, 1997.
- 정영현,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심포지엄, 1997.

[外國文獻]

-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and the Internet: Discussion Report of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ectronic Commerce Project*,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August 1997.
-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CEC),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pril 1997.
- E - land, 1997. <http://www.e-land.com>

Forrester Research, "U.S. Industry and Trade Outlook 1998", 1997.

Group of Ten, *Electronic Money*, April 1997.

Japa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Tow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For Rapid Progress in the Japanese Economy and Worl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Tokyo: MITI, May 1997.

OECD,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DAFFE/CFA(96)46, 1996.

_____, "usiness - to - Consumer Electronic Commerce Survey of Status and Issues," 1997.

_____, "Electronic Commerce: The Challenges to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November 1997.

_____, "Follow - Up Proposals to the Turku Conference on Tax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DAFFE/CFA(98)7, 1997.,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Tax Compliance and on th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s," DAFFE/CFA/WP8(96)10, 1997.

_____,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Issues for Permanent Establishments," DAFFE/CFA(97)14, 1997.

_____, "Issue Paper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Turku Conference, Finland," DAFFE/CFA/CT(97)22, 1997.

_____,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DSTI/CCP/AH(97)6/REV1 1997.

_____, "Proposals and Options for Indirect Tax Application to

- Electronic Commerce Related Supplies,” DAFFE/CFA/CT (97)20, 1997.
- _____,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and Global Commerce: Implications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DAFFE/CFA (97)35 /REV2, 1997.
- _____, “The Tax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DAFFE/CFA/WP6(97)6, 1997.
- _____, “Agenda for the Informal Meeting with Business on the Tax Administration Issues Associated with Electronic Commerce,” DAFFE/CFA/ECTA/A(98)2, 1998.
- _____, “A Proposal to Improve Technical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DAFFE/CFA(98)48, 1998.
- _____, “Commerce and Indirect Tax, the Way Forward,” DAFFE/CFA/CT(98)2, 1998.
- _____, “Draft Discussion Paper on Tax Administration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DAFFE/CFA/ECTA(98)2, 1998.
- _____, “Electronic Commerce: Banks and Withholding Taxes,” DAFFE/CFA/CT(98)17, 1998.
- _____, “Electronic Commerce: Progress Report by the Consumption Tax Project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Work to Date and Proposals for Further Study,” DAFFE/CFA/CT(98)13, 1998.
- _____, “Electronic Commerce: Summary of Recent Events and CFA Decisions,” DAFFE/CFA(98)21/REV1, 1998.
- _____,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DAFFE/CFA(98)38/REV1, 1998.

- _____, “Electronic Commerce: Work to Date and Proposals for Further Study, Annex G: Identification, Collection Mechanisms and Information,” DAFFE/CFA/CT(98)13/ ANNG, 1998.
- _____, “Impact of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on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s for Discussion by the Working Group,” DAFFE/CFA/WP1(98)6, 1998.
- _____, “Impact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the Definition and Tax Treatment of Royalties,” DAFFE/CFA/WP1(97) 11/ REV1, 1998.
- _____, “Recent Developments on Electronic Commerce,” DAFFE/CFA/WP8/WD(98)6, 1998.
- _____, “Summary Record of the First ECTA Meeting,” DAFFE/CFA/ECTA/M(98)1, 1998.
- _____, “Tax Convention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DAFFE/CFA/WP1/WD(98)7, 1998.
- _____, “The Tax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DAFFE/CFA(98)49, 1998.
- _____, “Using the Internet to Improve the Links Between Tax Administrations,” DAFFE/CFA(98)15, 1998.
- Schmid B., “Requirements for Electronic Markets Archite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Markets, Vol. 7, No. 1, 1997, pp. 3~6.
- USA, Department of Treasury,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DC, November 1996.

- _____, The White House,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DC, July 1997.
- _____,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 ; [http://www. iitf.nist.gov/elecomm/ecom.htm](http://www.iitf.nist.gov/elecomm/ecom.htm).



附 錄

1. 최근 발표된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틀의 내용요약
2. WTO와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과세 관련 논의내용



{부록 1}

최근 발표된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틀¹⁾의 내용 요약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1. OECD 가입국 정부(이하 정부)는 납세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갖게 되는 의문사항에 대한 자동전화응답시스템(interactive telephone answering system)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우편 고객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3. 정부는 세금 납부 및 환급이 납세자의 계좌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direct deposit programs)를 시행해야 한다.
4. 정부는 이동성이 강한 납세자들이 정부와 항상 접속이 가능하도록 전자우편 주소를 할당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납세순응비용의 최소화와 관련한 과세체계 개발

5. 정부는 전자미디어를 활용하여 세금신고서 및 기타 양식을 접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정부는 임금세(social and other payroll taxes) 등 정기적으로 지

1) OECD, Electronic Commerce : Development of a Taxation Framework, a Technical Issue Paper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DAFFE/ CFA (98)42).

급되는 납세액에 대한 자동공제(automated deductions)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7. 정부는 단순화된 통관절차(customs process) 및 수입/수출 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정부는 고객들이 공통된 등록사항(common registration information)을 적절한 정부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단일화된 홈페이지를 마련해야 한다.

9. OECD 가입국 과세당국(이하 과세당국)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순응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과세시스템을 단순화하려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발적인 납세순응도 강화

10. 정부는 과세당국의 웹사이트에 최신 정보 및 납세자 지침(taxpayer guidance)을 제공해야 한다.

조세행정, 납세자 신분확인 및 정보의 문제

〈납세자 신분 확인〉

11. 과세당국은 특정국가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 해당국가에서 전통적인 거래방식에 의존하는 사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전자상거래업자들이 등록하는 데 동의하였다.

12.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업당사자들의 신분확인

관한 그들의 견해를 정부의 다른 관련기관과 공유하며 이들과 연계해 작업하기로 합의하였다.

13.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업자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자발적 제공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아울러 이에 도움이 되는 시행 기준(code of conduct) 및 기타 제도적 장치들을 촉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4.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 사업당사자들의 신분확인에 관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게 과세당국 견해를 제공할 것에 합의하였다.

15.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 대해 전통적인 신분확인 원칙(conventional identification practices)을 적용하도록 요청한다.

16. 과세당국은 과세에 있어서 디지털 서명을 신분 증거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신분확인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만족스러운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Tax 정보〉

17. 과세당국은 ‘전자서류의 통합을 보증하는 메시지 해석 및 디지털 인증’과 같은 기술의 폭넓은 적용을 장려하는 시행규범 및 기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18.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해당기관에게 정보의 필요정도에 대한 과세당국의 견해를 피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19. 과세당국은 부주의로 암호해독 열쇠를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기타 협정에 의해 암호해독 열쇠의 복구가 가능한 암호화 방법 또는 기타 보안기술을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0. 과세당국은 현금결제경제(cash economy)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전자지불시스템이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해당기관에 확신시키기 위하여 견해를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21. 과세당국은 필요한 경우 징수 및 적절한 과세정보를 위해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22.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 등록표준 등의 개발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23. 과세당국은 보다 전통적인 형태로 수록된 정보와 비교해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정보의 획득에 그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규를 검토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금 징수 및 통제

24. 과세당국은 한 국가의 세금징수를 다른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OECD 모델조세조약에 포함시키도록 OECD를 통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5. 과세당국은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원천과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세수확보를 위한 가능성 있는 방법은 원천과세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원천과세가 사업자들에 의해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원천과세가 왜곡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자료지불체계(unaccounted payment system)가 보편화된 경우라면 원천과세가 소용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잠식문제를 안고 있는 과세당국은 원천과세의 잠재적 이익이 원천과세시스템의 형성 및 유

지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문제

〈소비지에서의 과세〉

26. 과세당국은 소비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27. 과세당국은 소비과세 목적상 통신판으로 전달되는 재화나 용역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세 징수〉

28. 과세당국은 그들의 세수기반 및 국내 공급업자들의 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납부제도 및 자진신고납세 또는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29. 과세당국은 세계관세기구(WCO)와의 협력 및 수입품 운송업자와 징수와 관계된 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수입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개발방안을 마련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부당하게 소비자로의 효율적인 제품인도 및 징세를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향후 작업〉

30. 과세당국은 과세장소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리고 용역과 무형

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OECD를 통한 협력을 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31. 과세당국은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과세장소에 대한 원칙을 결정짓기 위해 OECD를 통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32. 과세당국은 용역 및 무형자산에 대한 통용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33. 과세당국은 지속적인 효율성 있는 행정 및 소비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옵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34. 과세당국은 사업상의 장부의 형태에 관한 행정 요건, 연결허용요건, 감사장소 및 사업장부 보유기간을 검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35.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 보호 및 조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납세순응에 관한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국제조세협약 및 협력

〈조세 조약 문제〉

36.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가 어떤 한 국가에 소재한 서버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해, OECD 모델조세협약에 대한 주석서에서 명확히 설명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37. 과세당국은 사업소득에 대한 기존 과세규범의 적용을 면밀히 감독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38.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환경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가 요청되고 있다.

39.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가의 지불유형의 특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전 가격 문제〉

40.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추가적 지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전자상거래 발전추이를 주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제 협력〉

41. 과세당국은 ‘정보교환을 위한 OECD 표준 마그네틱 서식의 활용’ 및 ‘전자상거래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42. 조세행정문제에서 상호지원에 대한 유럽다자간협정/OECD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과세당국은 동 협정결정안을 검토하도록 요청된다.

43.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환경에 대해 남용적 과세회피행위 및 해로운 세제경쟁에 대처하고자 마련된 기존 방법들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자상거래에 대해 최근 승인된 OECD 보고서인 『Harmful Tax Competiton』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동의하였다. 또한 필요하다면 ‘낮은 과세 관할지역으로의 보다 용이한 접근과 관련한 납세자행위, 피지배외국법인체제의 정합성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납세자행위를 막고자 고안된 방안들에 대해 감독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부록 2]

WTO와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논의내용

1. WTO

WTO는 금년에 들어와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로 관세와 관련된 사안을 취급하고 있다. 금년 5월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각료선언은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당장 WTO 차원에서 무관세와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정치적 선언(political statement)의 채택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는 7월 22일에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포괄적인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WTO 1998, p. 1~2). 동 계획안에 따르면 WTO 내 해당기구, 즉 서비스무역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분야 쟁점사항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99년 6월 30일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학계, 기업인 대표, 소비자단체 및 인터넷위원회와 미국정부합동기

관(US government interagency working group)의 일련의 협의 이후, 1997년 7월 1일 미국 대통령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승인하고 발표하였다¹⁾.

이 기본구상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택적 조세정책 함의(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제목의 1996년 11월에 미국재무성에 의해 발표된 토론보고서(discussion paper)²⁾보다 우선되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에 따르면, 대통령은 1) 인터넷 상거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의 비과세 보장, 2) 일관성 없는 국가간의 조세주권 및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세체계의 적용, 그리고 3)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해 과세상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협약 달성을 위해, 재무장관이 주정부, 지방정부 및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은 조세, 전자화폐, 개인정보보호, 보안문제, 저작권보호, 소비자보호 및 시장접근의 영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신규 정책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1)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 3) 정부관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의 목적은 예측성, 일관성 및 단순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easury,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July 1997).

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easury,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s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Washington, DC: Department of Treasury, November 1996).

성을 가진 제도적 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거나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정부는 인터넷의 독특한 특징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과 규제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5) 전세계적 차원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등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 및 국제간의 조세정책 개발에서 1) 전자상거래는 거래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나 거래의 본질 및 장소를 변화시키는 조세제도에 의해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 2)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여 조세수입에 있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적용하기가 용이한 단순하고 투명한 제도여야 한다, 3) 번거로운 기장이나 모든 당사자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4) 현재 미국과 관련 무역당사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조세제도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네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에서는 위의 원칙들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현행제도에 있는 ‘기존의 조세개념과 원칙’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터넷이 재화나 서비스 이전에 사용되어질 때 무관세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환경의 이론적 근거는 자유무역이 모든 거래당사국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관세인하 협상에 동의할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는 인터넷 상거래는 역사적으로 재화의 물리적인 교역을 결정짓는 국경통과라는 명확한 지정학적 경계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3. 호주

1997년 8월, 호주국세청(ATO)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환경과 관련한 상세한 권고사항이 담긴 『세금과 인터넷(Tax and Internet)』이라는 토론보고서³⁾를 발표했다. 이 권고사항들은 전통적인 물리적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인에 대한 취급과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취급간에 중립을 지키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ATO 보고서는 산업, 세금 및 소득유형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과세 표준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다는 것과 즉각적으로 조세수입에 미치는 가시적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또 현재 많은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수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ATO가 전자상거래정책 수립시 다른 연방정부기관과의 연계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ATO는 세무 당국이 1) 인터넷 사업 배후에 있는 당사자들의 확인의 어려움, 2) 인터넷 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납세기록 보관 및 암호화 또는 흔적 없이 납세기록을 변경하는 능력에 따른 어려움, 3) 일부 전자화폐 형태가 지하경제의 문제점들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4) 생산 자료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제품유통과정에서의 효과적인 과세중개자(tax collection points)가 제거되는 문제, 5) 디지털화 방식으로 제품성격을 변화시키는 기술력,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 판매소득의 과세처리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으로 결론짓

3)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and the Internet: Discussion Report of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ectronic Commerce Project(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August 1997).

고 있다.

ATO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 기존 과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 1) 상거래 인터넷 사이트상의 호주기업의 등록번호(identification number)가 부여되도록 시도, 2) 인터넷사업을 위한 적절한 등록절차 마련, 3) 지하경제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는 전자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마련, 4) 전자장부의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술력(message digests)와 같은 이용 등과 같이 해결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EU와 회원국

1997년 4월에 유럽위원회(CEC)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계획(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했다⁴⁾. 이 플랜은 장래의 EU 활동에 있어 공통된 유럽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구촌 여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1) 글로벌 전자시장의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2) 바람직한 규제제도 마련, 3) 바람직한 사업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이행 일정 세 가지의 포괄적인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7월에 독일과 유럽위원회(CEC)가 공동으로 『세계정보네트워크(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EU 각료회의를 본(Bonn)에서 개최하였다. EU 각료, 유럽자유무역협회 구성원, 중앙 및 동부 유럽과 사이프러스, CEC 및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참가

4)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CEC),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pril 1997.

한 본(Bonn) 회의는 1) 세계정보네트워크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확대시키고, 2) 이 네트워크 활용을 방해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마련, 3) 유럽 및 국제협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최종 채택된 각료선언(이하 ‘본 선언’)에는 민간부문의 역할, 전자상거래 구조(framework)를 제공하고 신규 서비스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감 제공,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 국제적으로 유럽의 힘을 구축하고 강화할 것 등의 69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회의에서는 토론목적별로 수많은 선언문과 주제보고서가 있었는데 바 조세에 대한 주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의무가 명확·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확실성을 제공해 주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조세중립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주제보고서는 현행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VAT)는 전통적인 교역에 적용되어 왔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전자상거래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간접세와 관련해 높은 행정적 부담 및 복잡한 등록시스템이 전자상거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트(bit) 단위로 소비세를 부과하지는 비트세와 같은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주제보고서는 전자상거래의 속도와 무추적성 및 익명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정부의 조세수입을 보호하고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1) 전자상거래가 법제에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2)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세의 기초가 되는 지역적 개념, 즉 소득의 원천 개념 역시 이러한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본 선언에서 EU 각국의 각료들은 또한 세계정보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비차별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며,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5. 일본

1997년 5월에 일본은 『디지털 경제시대를 향하여 : 21세기 일본경제 및 세계경제성장의 급속한 진전을 위해』라는 제목하의 일본의 전자상거래 전략을 발표했다⁵⁾. 이 전략은 다음 다섯 가지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1) 변화에 대한 건설적인 노력 및 신속한 대응, 2) 기술과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 3) 보안성 및 신뢰성, 4) 전세계적인 접근방법, 5) 국제적 협력이 그것이다.

이 전략에는 일본이 국내와 국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 국제체제, 2) 상업거래규범, 3) 인터넷프로토콜규범, 4) 보안문제, 5) 개인정보보호, 6) 불법적인 내용, 7) 소비자문제, 8)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9) 인력자원과 교육, 10) 정보처리상호운용,

5) Japan,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Tow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For Rapid Progress in the Japanese Economy and Worl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Tokyo: MITI, May 1997).

11) 기타 제도적인 문제 등 11개 정책에 대한 토론 및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세와 관련하여, 이 전략에서는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소비가 일어난 위치과락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할권을 결정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97년 7월에 일본의 산업부 차관은 1)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야 하며, 2) 현 수준에서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내국 세 증가를 피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6. 정리

위에서 살펴본 WTO와 주요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 및 입장 검토를 통해 1)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2) 세무행정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정부 및 국제기구들은 전자상거래 문제들에서 과세정책 및 원칙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기존 조세개념과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체계는 1) 전통적 상거래 및 전자상거래간의 조세 공정성 및 중립성, 2)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정의 단순성, 3)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정의 순응성, 4) 다중의 과세부과 방지, 5) 신규 또는 전통적 조세가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의 다섯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합의하였다.

세정이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1)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소재와 신분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문제, 2) 전자상거래활동에서 소득원천

및 납세자 거주지와 같은 영토적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 3) 암호화된 기록(encrypted records)에의 접근방식 및 증명하는 문제가 향후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Executive Summary

Taxation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in the OECD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Yu-Chan Kim · Seong-Bong Lee

Electronic commerce is emerging as one of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the potential of becoming one of the major featur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changing the conventional method of transactions. Consequently, as a new way of doing business, electronic commerce will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existing trade norms.

A major issue in electronic commerce deals with its taxation aspects, as various problems arise in applying current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to electronic commerce. However, even with a strong initiative to align multilateral rules governing electronic commerce, there can be varying positions among countries simply due to concerns of undermining their tax revenue.

OECD is a dominant agenda - setting body leading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mmarizes OECDs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with regard to taxation and examines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Issues of discussions surrounding taxation policy on electronic commerce includes Value - added Tax (VAT), customs duties,

international taxation, and tax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VAT, the main issue at hand is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supply to assess product/service - related tax liabilities. As for customs duties, there is a growing need to differentiate taxation according to the method of transaction, as goods can effectively avoid taxation when ordered or delivered electronically. Regarding international taxation on corporate income, concerns are related to determining the pla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o transfer pricing. Lastly, tax administration issues deal with taxpayer identification, acquiring evidences on taxable transactions and income, application of tax rules, and maintaining tax revenues, by securing information on taxpayers and income through a consolidated network.

Domestically, the question of how to address taxation problem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s also a top priority. The basic principle of the solution will be to modify the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to incorporate transaction via the internet, while focusing efforts to shape international norms in line with national interests by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Most importantly, with regard to Korea's taxation policy on electronic commerce, provision of services by foreign companies needs to be included as a taxable transaction in the VAT system, which is currently bases its principle of taxation on the country of destination.

In respect to the demand for discriminatory tariff treatment

between products traded traditionally and electronically, Korea may have to adhere to the declaration made at WTO Ministerial Meeting to introduce no new tariffs for products traded electronically.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axation technologies and further discussion within the WTO and OECD, a more in - depth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ariffication needs to be conducted.

As for taxation of income generated from by foreign companies from domestic electronic commerce, Korea should adopt a system of taxing the income source, irrespective to the prese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While this is not a matter solely under the national authority of individual states, considering that a consensus for greater taxation right of country of origin is expected to increase within OECD, Korea needs to take a more clarified position on the issue. Lastly, regarding transfer pricing, Korea must accumulate its own experiences in line with the current discussions within the OECD.

The core issue in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is identifying individual transactions made through internet. Taxing authorities, therefore, in cooperation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 who possess information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will have to look for ways to efficiently solve taxation problems, by, for example, intervening in the payment process to levy withholding taxes.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systemically introduce electronic technologies in the taxpayer service system in the long term.

發刊資料 目錄

■ 調查分析

- 92-01 中國的經濟實績과 展望(1991-1992) /
安鍾石·楊平燮
- 92-02 러시아聯邦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 尹瓚赫
- 92-03 中國 外國人直接投資誘致 政策的 變化和 韓
國的 對中投資 / 安鍾石·楊平燮
- 92-04 슬로베니아共和國의 經濟現況 / 車相敏
- 92-05 러시아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現況
과 課題 / 崔秉熙
- 92-06 海南省의 經濟 및 投資概況 / 盧浩鎮
- 92-07 체코 슬로바키아 兩共和國 工業構造 分析 /
朴相敏
- 92-08 瀋陽市 投資環境 分析 / 朴相守
- 92-09 中國經濟의 地方分權化 現況과 問題點 /
朴月羅
- 92-10 中國 國營企業의 雇傭 資金制度 改革 /
趙眞母岐
- 92-11 天津市 投資環境 分析 / 金京鎬
- 92-12 中國의 證券市場 現況 / 韓亨九
- 92-13 러시아聯邦 石油 가스産業 / 鄭珉受
- 92-14 러시아 極東地域 經濟概況과 日本의 進出現
況 / 林虎祥
- 92-15 폴란드 貿易制度 分析 / 金奎坂
- 93-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와 向後 課題 /
安鍾石
- 93-02 中國의 外換管理制度 / 楊平燮
- 93-03 러시아의 商品流通構造改革 / 尹瓚赫
- 93-04 中國의 外資企業 租稅制度 / 趙眞母岐
- 93-05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制度分析
/ 權 栗
- 93-06 上海市 投資環境 / 朴月羅
- 93-07 러시아 聯邦 運輸體系 / 鄭隆洙
- 93-08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政策과 現況 /
權 栗
- 93-09 美 中 經濟協力の 現況과 展望 / 安鍾石
- 93-10 러시아聯邦 鑛物資源開發 制度 / 崔聖基
- 93-11 칠레 經濟現況 / 張光翼
- 93-12 東歐 主要國의 雇傭 資金制度 分析 / 金奎坂
- 93-13 日本의 對中 經濟協力 實態 / 金京鎬
- 93-14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 朴相守
- 93-15 멕시코 經濟現況 / 金榮敦
- 93-16 브라질의 資源開發現況 / 朴英鎬
- 93-17 中國의 建設業 現況과 進出 可能性 / 趙眞母岐
- 94-01 東歐 主要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政策 및 制
度 / 金奎坂
- 94-02 中國의 自動車産業 現況과 韓 中 協力方案
/ 安鍾石
- 94-03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 / 朴相守
- 94-04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和 韓國의 ODA
支援方向 / 權 栗
- 94-05 主要 先進國의 對印度 經濟協力 現況과 烏
리나리의 經濟協力 / 趙忠濟
- 94-06 러시아의 輸出入 制度 / 尹瓚赫
- 94-07 아세안自由貿易地帶의 形成과 우리의 對應
方案 / 楊平燮
- 94-08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外國人 投資
制度 / 李哲元
- 94-09 러시아의 雇傭 資金制度 / 徐承源
- 94-10 러시아 銀行制度 / 李聖燮
- 95-01 러시아 證券制度 및 市場 現況 / 崔秉熙
- 95-02 러시아 自由貿易地帶 推進 現況 / 鄭隆洙
- 95-0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 /
李哲元
- 95-04 시베리아地域의 賦存資源 및 開發現況 /

徐承源

95-05 ODA 運營體制 改善方案 / 權 栗

95-06 韓 인도네시아 經濟協力 強化方案 : 公的開發援助(ODA)를 중심으로 / 金完仲

95-07 中美共同市場(CACM) 및 會員國別 經濟現況 / 朴英鎬

96-01 西方의 러시아 石油 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示唆點 / 서승원

96-02 한국 기업의 대 CIS 투자 및 과제 / 이철원

96-03 러시아 經濟地域의 경제 社會 現況 分析 / 정용주

96-04 러시아의 최근 兩大選舉와 향후 政策變化 展望 / 최병희

96-05 對미안마 經濟協力 強化方案 / 정재완

96-06 멕시코의 공기업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 김형수

96-07 브라질의 民營化推進現況과 向後 展望 / 정선우

96-08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 조현준

97-01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宇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 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權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進出現況과 展望 /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產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潛兇에 관

한 研究 /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制度 / 李炯根

98-01 80년대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 鄭仁教·李昌在

98-03 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 조정과제 / 趙燾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揆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 연구 / 鄭聖哲·李珪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 중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연구시리즈 : APEC 주요함회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鎬·文字植 外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조기자유향 분야를 중심으로 / 孫正植·韓烈烈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2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徐勳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李晟鳳

金裕燦

서울대학교 졸업(1981)

독일 Hamburg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8)

독일 Hamburg대학교 경제학 박사(1992)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現)

著書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1996)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1997)

李景鳳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1989)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1991)

독일 Mannheim대학교 경영학 박사(19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著書 『獨逸稅法論』(1997)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1997)

조사분석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1998년 12월 25일 인쇄

199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86, 1179 FAX: 3460-1077, 1144

인쇄 한가람 미디어 전화: 2264-6009 대표: 신선아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및 複製를 금함】

ISBN 89-322-7058-9 94320

89-322-7044-9 (세트)

값 5,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1998년 11월부터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 투자부문 (계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압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 회원특전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기관회원
- 일반회원
- 교환기관
- 자문위원
- 이사
- OB

	S	A	B	C	D	E	F
	발간물일체	무역·투자	구주경제	미주경제	아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